

제 호

직 권 조 치 통 지 서

성 명		생 년 월 일	
주 소		세대주의 성명	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
년 월 일 직권조치()했음을 통지합니다.

(문의전화: 담당자:)

※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읍·면·동 장 인

제 호

직권조치통지서 수령증

성 명	외 명			생 년 월 일	
주 소				세대주의 성명	
조치내용		수령자	(서명 또는 인)	수 령 일	
비 고					